■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2024. 12. 31.>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년 월)

※ 관리번호		처리기간 15일
신청인・환급대상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및 환급신청 내용	구입 연월일	차명	수량	금액 ① 구입가액	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③ 합계 (①+②)
	합계					

환급금계좌 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없음
	환급대행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대상자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 3. 환급대상자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작성방법

이 신청서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와 해당 과세자로부터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년 월)란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구입일이 속하는 달을 작성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환급대행자는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신설 2024. 12. 31.>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년 월)

※ 환급대행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일련번호	환급대상자		구입내역		비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입가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